

사회복지법

여성들엔 '속빈강정'

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여성들은 '뿌리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민연금·가족수당·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차원의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사실은 '최근 여성개발원이 펴낸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89년 9월1일부터 지난 8월30일까지 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모자보건법 등 사회복지법제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박인덕·김엘림·서명

선·배영자씨는 "현행 사회복지법제는 '생계부양자인 남편과 남편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주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을 전제로 '가부장적 성별 역할분업'을 강조·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맞벌이·독신·이혼한 사람 등 새로운 가족형태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 체계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보완·개선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자의 경우 결혼하면 생계부양자로 인정돼 기본급여액에 덧붙여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하는 여성의 경우는 부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는 연금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10여년 정도 더 긴 여성들의

이 '생활보호대상 임산부에 대해 해산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산을 보호받은 여성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인당 월소득 4만8천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 대상층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을 위해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편모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

결여된 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미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사회복지법제에 대해 분석한 박씨 등은 가부장적 가족을 보호 대상의 기본단위로 삼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법제를 남녀평등한 복지법제로 개선하기 위해선 △각종 복지관계법에 들어 있는 성차별 규정의 개정과 제도적 미

비점의 보완 △취업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차원의 탁아법 제정과 탁아시설 확충 및 탁아비 정부지원 △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인력의 각종 법제위원회에의 참여 보장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증대와 동등한 대우보장 △가사노동의 재평가와 적절한 형태의 보상 △여성복지전문가와 여성법률가의 연계망 구축 △당국의 제대로 된 여성복지정책 수립과 여성복지인식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숙 기자〉

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등 거의 혜택 못받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반영...법제보완 필요

노후 빈곤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의료보험법도 전통적 가족부양 원칙을 전제로 해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 남자는 본인의 보험료로 피부양자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맞벌이하는 여성은 본인만 의료보험 대상이 될 뿐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생활보호법

이 '생활보호대상 임산부에 대해 해산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산을 보호받은 여성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인당 월소득 4만8천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 대상층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집·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은 구속력이 거의 없고,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